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
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강정애 (국가보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특수임무유공자 자녀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보훈특별고용을 통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, 보훈특별고용 선정 결과 통보기한 및 신체검사 관련 규정 등 취업지원 운영 관련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자녀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지원연령 상향 조정(제24조의2)

－ 보훈특별고용 지원연령을 현행 35세에서 39세로 상향

나. 보훈특별고용 선정 결과 통보 시 예외적인 경우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(제24조제2항)

다. 채용신체검사 관련 규정 등 취업지원 운영 관련 미비점 개선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2제1호 중 “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군무원”을 “일반군무원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”을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일반군무원”으로, “일반직공무원을”을 “일반직공무원과 「군무원인사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을”로 한다.

제2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채용시험 실시 등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통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24조의2 본문 중 “35세까지로”를 “39세까지로”로 하고,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.

제28조제1항 중 “종합병원”을 “종합병원 또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정하는 의료기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훈특별고용 지원연령 조정에 따른 적용례) 제24조의2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20조의2제2호에 따라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의2(취업지원의 신청) 법 제20조의2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이력 서를 첨부한 후 국가보훈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20조의2(취업지원의 신청)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법 제21조에 따라 일반직공 무원과 <u>관리운영직군에 속하 는 일반군무원</u> (이하 “일반직 공무원등”이라 한다) 특별채 용 대상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: 일반직공무 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	1. ----- ----- <u>일반군무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2. (생 략) 제21조(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 원 등)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 에서 “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 반직공무원</u> ”이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8의2에 따른 일 반직공무원을 말한다.	2. (현행과 같음) 제21조(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 원 등) ① ----- ----- “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 반직공무원과 일반군무원</u> ”----- ----- ----- 일 반직공무원과 「 <u>군무원인사법 시행령</u> 」 별표 1에 따른 관리운

② (생 략) 제24조(보훈특별고용 등) ① (생 략)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 ③ ~ ⑤ (생 략) 제24조의2(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)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은 <u>35세</u>까지로 한다. <u>다만, 35세 이전에 제20조의2제2호에 따라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취업희망 신청서에 한정하여 38세까지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을 한다.</u>	<u>영직군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을</u> ----. ② (현행과 같음) 제24조(보훈특별고용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<u>다만, 채용시험 실시 등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통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u> ③ ~ ⑤ (현행과 같음) 제24조의2(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) ----- ----- <u>39세</u>까지로 --. <u><단서 삭제></u>
---	---

제28조(채용신체검사의 판정) ① 법 제26조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”이란 「의료 법」 제3조의3에 따른 <u>종합병원</u> 을 말한다.	제28조(채용신체검사의 판정) ① ----- ----- ----- <u>종합병원</u> <u>또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정하</u> <u>는 의료기관</u> 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	
연 락 처	(044) 202 - 5651